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6. 27.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5월 30일

나. 발 의 자: 김지연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2025년 6월 9일

라. 상정일자: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5. 6. 1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지연 의원)

가. 제안이유

-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영등포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제5조)
- 부모교육의 대상, 부모교육의 내용 등(안 제6조 ~ 제7조)

- 부모교육의 위탁, 재정지원(안 제8조 ~ 제9조)
- 협력체계의 구축, 포상(안 제10조 ~ 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류데레사)

□ 제정 배경 및 취지

-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 중 85.9%가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모의 양육역량이 아동의 안전과 직결됨을 시사함.
- 또한, 한부모,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맞벌이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로 인해, 기존의 획일적인 부모 역할만으로는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가족 특성과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실제, 국가권익위원회 연구자료에 따르면,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94.2%가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부모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에 따라
-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를 통해 아동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고, 이를 위한 교육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보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정의)는 본 조례안에 골자인 '부모교육'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교육의 방법(지식, 정보 또는 기술 등의 제공)과 목적(능력, 자질 및 태도 함양)을 명확히 함.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는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에게 노력의무를 규정함.
-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본 조례안이 '부모교육'에 관한 기본조례임을 명시하여, 타 조례 적용에 관하여 명확히 함.
- 안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제1항은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제2항은 종합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여 계획의 전문성 및 현장 적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 제3항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6조(부모교육의 대상)는 혼인 여부나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구민 누구나 교육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다양해지는 가족 형태와 양육 환경을 포용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등)는 현장 강의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방식을 통해 부모교육의 접근성을 제고하였으며,
 - 교육 내용 또한 자녀의 발달 단계별 교육, 가족 내 건강한 관계 형성, 가정폭력 예방 등을 포함하여 궁극적으로 ‘건강가정 조성’이라는 본 조례안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절히 규정함.
- 안 제8조(부모교육의 위탁)는 부모교육의 전문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9조(재정지원)는 부모교육 시행 또는 활성화와 관련된 단체 등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검토 결과

- 아동학대 사례 중 상당수가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한부모·조손가정·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부모교육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는 물론 건강하고 안전한 가정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전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42
----------	-----

발의연월일: 2025. 5. .

발 의 자: 김지연, 차인영, 유승용
전승관, 정선희(5인)

1. 제안이유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 「영등포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제5조)
- 라. 부모교육의 대상, 부모교육의 내용 등(안 제6조 ~ 제7조)
- 마. 부모교육의 위탁, 재정지원(안 제8조 ~ 제9조)
- 바. 협력체계의 구축, 포상(안 제10조 ~ 11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강가정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모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부모교육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대상, 내용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7.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모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회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종합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부모교육의 대상)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등) 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에 관한 사항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 시민 의식 고취

에 관한 사항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에 관한 사항

6.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올바른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부모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부모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 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법인, 단체, 공무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표창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

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